

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
(박충권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전기통신사업과 이용자 후생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항만 남겨 「전기통신사업법」과 통합하고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을 폐지함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